투자 위험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 호(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 호(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 호(사모투자재간접형)** (E4178)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 년 8 월 28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년 10 월 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3 년 10 월 10 일 ~ 2023 년 10 월 27 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폐쇄형(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설정일 이후 90 일 이내]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상장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되므로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

실위험에 노출되며, 현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미설정 상태입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0.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시점까지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1 종) 수익증권·후순위(2 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순위(1 종)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투자자로 최초설정 시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비중으로 분산투자하여 가격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손실발생 시 후순위 투자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각 개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등적 손익배분구조가 이 투자신탁의 원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이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5%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부담은 이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 손실부담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 년이지만, 3 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

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 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고 MMF 등 유동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기간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목표수익률 도달 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경과한 후 목표수익률 도달 시: 목표 수익률 도달 이후 6 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 년을 초과하지 않음

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를 차등화 하는 구조로 손익분배 차등화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 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6.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7. 모집(판매)기간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100 억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요약정보

제I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 위험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다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 · 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어 산출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에 따라 집중 투자에 따른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 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당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향후 성장 가치를 향유 하기 위하여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제적 해자: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경쟁 우위를 말한다.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해자에 비유한 용어 - 개별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하위 테마 구성은 미래 모빌리티, K-컬쳐, 테크,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지배구조, 딥밸류로 구성되며 시장 내 중요도와 성장성 등 당사의 정성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주로 국내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며, 7개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설정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범위내에서 동일비중으로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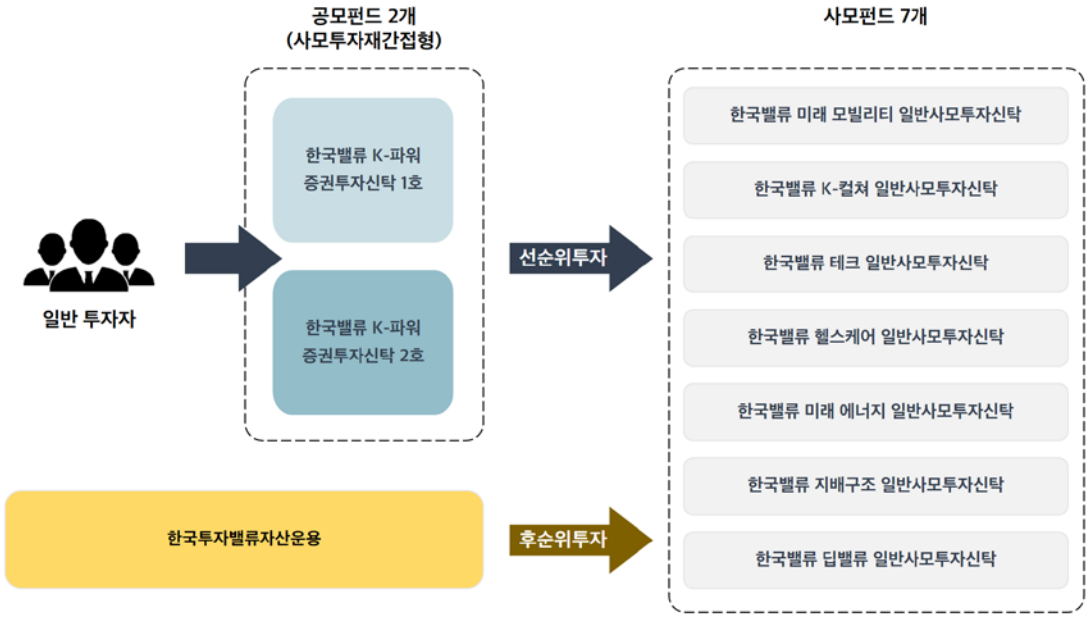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설정 · 운용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선순위(1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선순위(1종) 수익증권 · 후순위(2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발생시 후순위 투자자는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에는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으로 인하여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 투자자로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이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5%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부담은 이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 손실부담이 아니므로,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7개의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여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며,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하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나 자산 비율 20%에 근접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하에 하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하여 비중을 낮추고, 이로 인하여 선순위 출자자인 이 투자신탁에 지급된 환매대금은 다른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MMF등에 투자하여 개별 하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을 20% 이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지분율 50%제한을 준수하고자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동일한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를 이 투자신탁 설정일과 동일한 일자에 설정하여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동일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에 따라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손익에 반영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고 MMF등 유동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기간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목표수익률 도달 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목표수익률 도달 시: 목표 수익률 도달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구조(예시)

구분	투자자	금액	비율
선순위 (1종)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호(사모투자재간접형)	85억원	85%
후순위 (2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5억원	15%
합계		100억원	100%

(주1) 상기 예시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각각 100억원원 규모로 설정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개펀드에서 합산하여 7개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금액을

85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각각 15억원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2)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개펀드의 투자금액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금액 및 펀드 최소결성금액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모집 목표금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로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원금 및 손익배분 구조(예시)

- 선순위(1종)·후순위(2종) 투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손익	손익배분 구조
이익발생 시 원금 및 수익 배분 순서	①선순위(1종) 투자원금 ②후순위(2종) 투자원금 ③선순위(1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④후순위(2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⑤잔여수익이 있는 경우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가 50:50의 비율로 배분
손실발생 시 손실배분 순서	①후순위(2종) 투자원금 ②선순위(1종) 투자원금 ※후순위(2종) 투자원금이 "0"이 될 때까지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이후 선순위(1종) 투자원금에서 추가로 차감

■ 투자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 7개)

- 한국밸류 미래 모빌리티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밸류 K-컬쳐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밸류 테크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밸류 헬스케어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밸류 미래 에너지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밸류 지배구조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밸류 딥밸류 일반사모투자신탁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손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재간접형), 폐쇄형(환매 불가능), 단위형(추가납입 불가능),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선취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80**	**0.66**	0.60	0.70	1.24	206	337	473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40**	**0.36**	0.30	0.43	0.94	136	236	340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다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 비중 투자를 가정하여 평균으로 약 연 0.58%를 산정)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박상민	1986	수석매니저 (책임)	14	3,214	-	-	-	-	7년 10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주식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위험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 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섹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 사모펀드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사의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서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 운용내역 및 기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결과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차등배분구조)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개별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선순위 투자자로서 투자할 예정이므로 개별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후순위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 후순위 출자는 개별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을 기준으로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원본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출자비율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1좌=1,000원)	**환매 방법**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환매불가)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 · 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6978.6300 / 인터넷홈페이지: va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27일	**모집 · 매출총액**	10억좌 (1조원, 1좌=1,000원)
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있음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다만, 1.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고 MMF등 유동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기간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목표수익률 도달 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목표수익률 도달 시: 목표 수익률 도달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 호(사모투자재간접형)	E41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4179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418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1)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2) 사모투자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억좌(1 조원, 1 좌=1,000 원)

※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100 억원) 이하이거나, 주식시장 등이 급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2023 년 10 월 10 일부터 2023 년 10 월 27 일까지

(2) 모집장소: 판매회사(한국투자증권) 본·지점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의 상장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상장 이후의 거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 신탁의 원본액이 3 억원 이상일 것

(2) 발행요건 : 당해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또는 매각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3) 1 좌당 원본액 : 1 좌당 원본액이 500 원 이상일 것

다. 상장폐지요건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 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전액 중도환수: 집합투자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수된 경우

(3)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09 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구분	내용
상장시장 명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정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90 일 이내
거래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주 1)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2)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제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 호(사모투자재간접형)	E41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4179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418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23.10.27	최초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고 MMF등 유동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기간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목표수익률 도달 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목표수익률 도달 시: 목표 수익률 도달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누적기준가격 :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전액이 분배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즉,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 및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이익초과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세전기준)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미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vam.koreainvestment.com)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3.08.28.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 단위: %)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상민	1986	수석매니저	14	3,214	-	-	-	-	7년 10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 신한금융투자(2010~2014)
- 스팍스자산운용(2014~2015)
- 타임폴리오자산운용(2015~2020)
- 하이자산운용(2020~2022)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22~현재)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1)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개)	운용규모(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상민	3	50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나. 최근 3 년 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형(재간접형), 폐쇄형,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펀드특성에 따라 2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당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향후 성장 가치를 향유 하기 위하여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제적 해자: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경쟁 우위를 말한다.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해자에 비유한 용어

- 개별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하위 테마 구성은 미래 모빌리티, K-컬쳐, 테크,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지배구조, 딥밸류로 구성되며 시장 내 중요도와 성장성 등 당사의 정성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주로 국내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며, 7개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설정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한도</th><th>투자대상 세부내용</th></tr>
<tr><td rowspan="2">① 집합투자증권 등</td><td>50%초과</td><td>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td></tr>
<tr><td colspan="2">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td></tr>
<tr><td colspan="3">②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r><td colspan="3">※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td></tr>
<tr><td colspan="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 16 조 제 1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 16 조 제 1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td></tr>
<tr><td colspan="3">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td></tr>
</tabl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2) 주 1)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호, 제 3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3 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설정일 부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1개월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u>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 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 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 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범위에서 동일비중으로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2) 상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설정 · 운용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7 개의 테마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선순위(1 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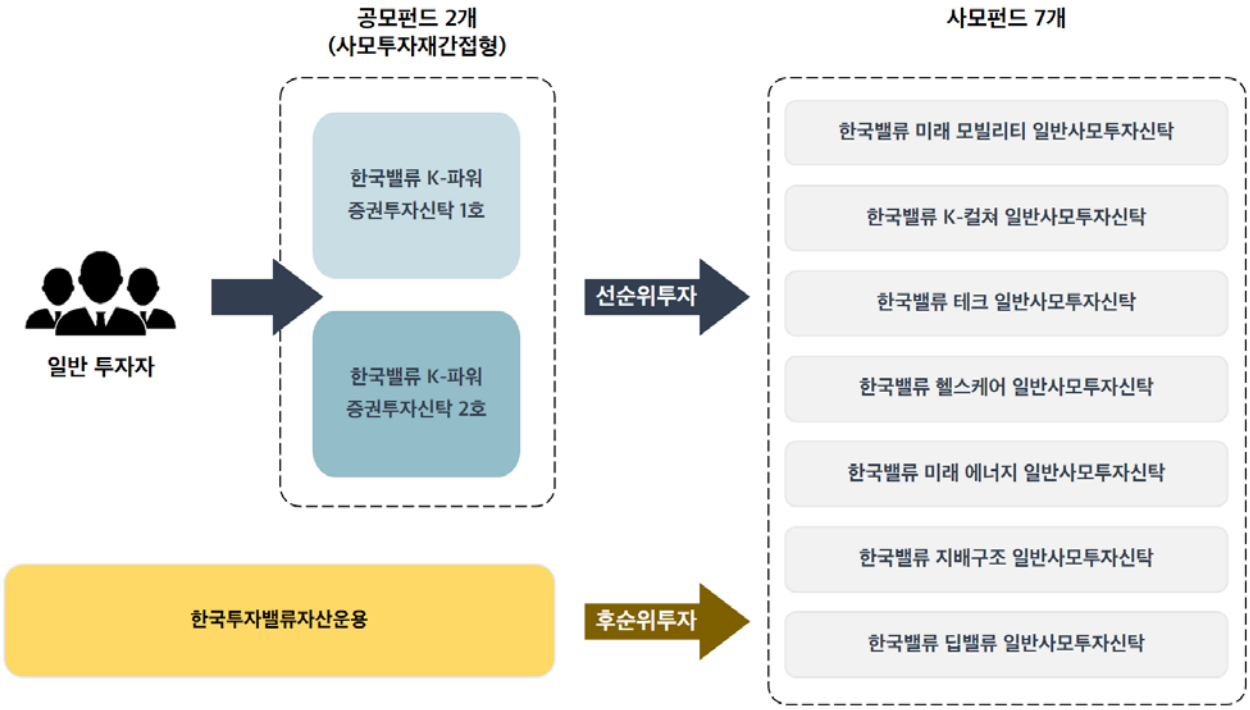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선순위(1 종) 수익증권 · 후순위(2 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발생시 후순위 투자자는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 투자자로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이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5%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부담은 이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 손실부담이 아니므로,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7 개의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후순위(2 종) 수익증권에 각각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여 투

자 안정성을 제고하며,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하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나 자산 비율 20%에 근접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하에 하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하여 비중을 낮추고, 이로 인하여 선순위 출자자인 이 투자신탁에 지급된 환매대금은 다른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MMF등에 투자하여 개별 하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을 20% 이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지분율 50%제한을 준수하고자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동일한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를 이 투자신탁 설정일과 동일한 일자에 설정하여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동일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에 따라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손익에 반영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고 MMF등 유동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기간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목표수익률 도달 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목표수익률 도달 시: 목표 수익률 도달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구조(예시)

구분	투자자	금액	비율
선순위 (1종)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한국밸류 K-파워 증권투자신탁 2호(사모투자재간접형)	85억원	85%
후순위 (2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5억원	15%
합계		100억원	100%

(주1) 상기 예시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각각 100억원 규모로 설정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개펀드에서 합산하여 7개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금액을 85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각각 15억원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2)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개펀드의 투자금액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금액 및 펀드 최소결성금액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모집 목표금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로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원금 및 손익배분 구조(예시)

- 선순위(1종)·후순위(2종) 투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손익	손익배분 구조
이익발생 시 원금 및 수익 배분 순서	①선순위(1종) 투자원금 ②후순위(2종) 투자원금 ③선순위(1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④후순위(2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⑤잔여수익이 있는 경우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가 50:50의 비율로 배분
손실발생 시 손실배분 순서	①후순위(2종) 투자원금 ②선순위(1종) 투자원금 ※후순위(2종) 투자원금이 "0"이 될 때까지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이후 선순위(1종) 투자원금에서 추가로 차감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1종) · 후순위(2종) 수익률(예시)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운용수익률	산순위(1 종)수익률	후순위(2 종)수익률
-30.00%	-17.65%	-100.00%
-20.00%	-5.88%	-100.00%
-15.00%	**0.00%**	**-100.00%**
-10.00%	0.00%	-66.67%
0.00%	0.00%	0.00%
5.00%	5.88%	0.00%
8.50%	10.00%	0.00%
10.00%	**10.00%**	**10.00%**
15.00%	12.94%	26.67%
20.00%	15.88%	43.33%
30.00%	21.76%	7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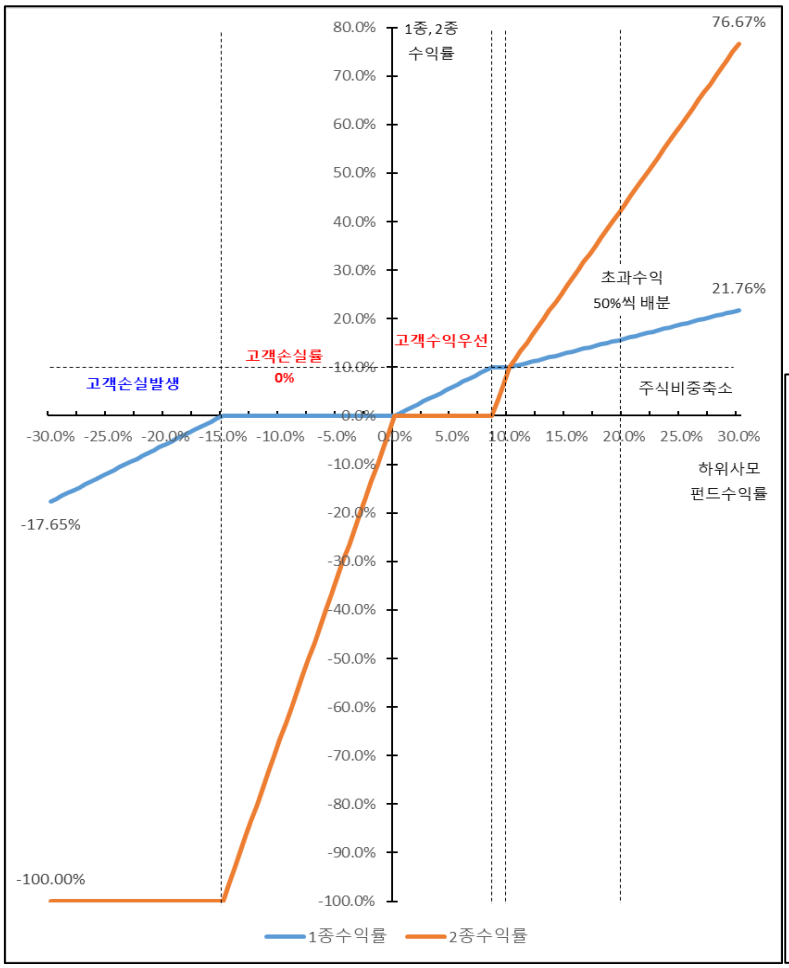

하위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	후순위 수익률
30%	21.76%	76.67%
20%	15.88%	43.33%
15%	12.94%	26.67%
10%	10.00%	10.00%
8.5%	10.00%	0.00%
5%	5.88%	0.00%
0%	0%	0.00%
-5%	0%	-33.33%
-10%	0%	-66.67%
-15%	0%	-100.00%
-20%	-5.88%	-100.00%
-30%	-17.65%	-100.00%

(주1) 상기 수익률 및 그래프는 이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예시 자료입니다.

※ 상기 예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개요**

구분	내용
투자신탁 유형	투자신탁, 혼합자산형, 개방형, 단위형, 사모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	2023년 10월 30일(예정)
투자신탁 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26년 10월 26까지 (예정) 다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유중인 투자신탁재산 전부가 현금화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 투자신탁재산 전부가 현금화된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
투자신탁보수 등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투자신탁보수(순자산 기준, 연간) : 0.58% 1.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0.50% 2. 판매회사 보수율 : 0.01% 3. 신탁업자 보수율 :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0.03%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일반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

펀드명	주요내용
한국밸류 **미래 모빌리티**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투자 - 전동화 밸류체인내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 - 자율주행 기술 선도 기업 및 상용화 시대에 부각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 2. 투자대상: 주로 자동차, 반도체, 하드웨어, 2차전지 등 업종에 투자할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한국밸류 **K-컬쳐**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컬쳐 및 콘텐츠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K-pop, K-food, K-beauty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폭발적 성장에 투자 - 식품, 의료기기 등 제품뿐만 아니라 게임, 미디어, 웹툰 등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 무형자산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 발굴 2. 투자대상: 주로 엔터, 게임, 소비재, IT S/W, 음식료, 제약 등 업종에 투자할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한국밸류 **테크**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등 테크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반도체, AI 등 기술 진화 및 성장에 중점 투자 - 글로벌 첨단 기술 진화 시대 수혜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 투자 - AI서버 등 신성장 시장, 기존 반도체 및 OLED 산업 사이클 저점 반등권을 앞둔 상황에서 테크 소재, 부품, 장비 선제적 투자 확대 2. 투자대상: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등 업종에 투자할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한국밸류 **헬스케어**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헬스케어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바이오, 의료기기 (의료, 미용 등) 성장에 중점 투자 - 글로벌 고령화 시대에 지속 증가하는 헬스케어 지출 수혜가 기대되는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 -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항암제 및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R&D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 선별 및 집중 투자 2. 투자대상: 주로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한국밸류 **미래 에너지**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미래 에너지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 -기후 위험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그룹화하여 투자 기업 발굴 -탄소저감 핵심산업인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투자 -에너지전환 적응 및 기후 위기 생존을 위해 새롭게 가치가 부각될 기업에 투자 2. 투자대상: 주로 에너지, 조선기계, 화학, 전기전자 등 업종에 투자할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한국밸류 **지배구조**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지주회사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한 지주, 지분경쟁, 액티비즘 테마 보유 주식에 대한 투자 - 현재 역대 최대수준인 국내 지주사의 NAV대비 할인율(60~70%)속에서 신성장가치를 보유, 자회사가치 상승 기대되는 지주사, 자회사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지주사, 히든밸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에 투자 - Buy and Hold를 통해 배당수익 극대화 2. 투자대상: 주로 지주관련 업종에 투자할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한국밸류 **딥밸류** 일반사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당사 가치투자 원칙을 준수하여 주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운용전략: 본질 가치의 추세적 성장에 중점 투자 -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소외된 주식에 집중투자하여 내재가치가 발현될때까지 Buy & hold 전략 구사 - 기대감의 선반영보다는 저평가 종목의 평균회귀 현상에 집중 2. 투자대상: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으며 절대 이익규모 대비 저평가 된 종목에 투자 예정 -보수: 연간 총 0.58% (운용보수 0.50%, 판매보수0.01%, 신탁보수 0.04%, 사무수탁보수 0.03%)

※ 상기 7 개의 피투자 사모펀드는 작성기준일 현재(2023.08.28) 미설정 상태입니다.

※ 상기 7개의 피투자 사모펀드의 주요내용은 작성기준일(2023.08.28) 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구조 및 전략은 예시이며, 실제 운용에서는 당사 사정 또는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정기 또는 수시로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 투자전략 점검 및 투자대상자산 등에 대해 당사의 집합투자재산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일별 기준가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주식/현금편입비율, 유동화일수 등 위험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유동성 및 위험수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투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급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집합투자재산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당사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의 비상대응계획을 위기대응매뉴얼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환매의 경우 펀드런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위기상황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비상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1 단계: 일정규모의 대량환매 등 발생 시 펀드런 대응팀 구성 및 펀드 유동성 체크 2 단계: 대량환매 지속시 자산매각 등 조치 시행 및 펀드런 대응팀 가동

3단계: 환매요구 장기간 지속시 유동성 확보 극대화 및 환매연기 조치 검토 (펀드 내 보유자산 처분 불능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 결정 및 수익자 통지) 진정: 환매규모 감소 등 대량환매 진정단계시 상황 진도점검 및 포트폴리오 정상화 등 사후조치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주식 등)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주식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 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 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 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섹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자신탁 또한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 · 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차등배분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손익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각 피투자 사모펀드에 선순위 투자자로서 투자할 예정이므로 각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가 후순위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출자비율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사모펀드의 보수·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투자자의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은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0%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기구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상장거래 시 가격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상장된 이후에도 이 투자신탁의 거래가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기준가격(NAV)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금 지급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만기가 3 년인 폐쇄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연장이 결의된 경우에도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상장 주식이므로 해당 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 발생 시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은 선순위 투자자의 과세대상수익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 해외투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져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져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져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이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 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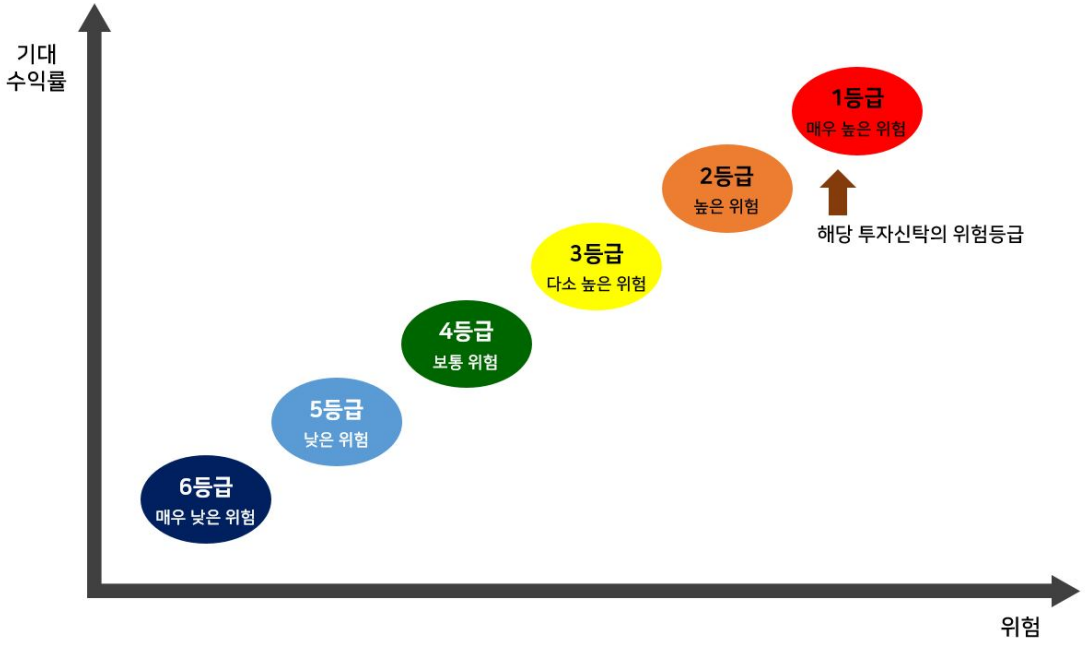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1좌를 1, 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80% 이내

2)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40% 이내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상장된 수익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수익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인터넷 홈페이지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비등록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 등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의 평가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
파생결합증권	-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CIO, 준법감시인, 운용 부서장, 운용지시 담당부서장,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
업 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0.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80% 이내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가입자	납입금액의 0.40% 이내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과기준		**매입 시**	**환매 시**	**환매 시**	**전환시**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종류 A 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80% 이내, 종류 A-e 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0%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01	0.60	0.03	0.02	0.66	0.70	-	0.66	1.24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01	0.30	0.03	0.02	0.36	0.43	-	0.36	0.94	-
지급시기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iNAV 산출비용,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 · 선물 · 옵션 매매수수료, 콜론 · 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된 투자신탁으로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신탁보수만을 나타냅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 비용 비율을 연간 [0.58%]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7) 직전 회계기간 중 실제 발생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발생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
증권거래비용	-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금융비용 예시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분담금 예시 :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	-
종류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7	217	290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6	337	473	-	-
종류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7	115	155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	236	340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 비용을 연간 [0.58%]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0.8%, 납입금액의 0.4%]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최초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배당금 등을 수령한 경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매각 · 상환됨에 따라 매각 · 상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2. 투자대상자산에 투자 · 운용한 이후 투자신탁재산 내에 여유현금이 발생하는 경우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 · 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동안 발생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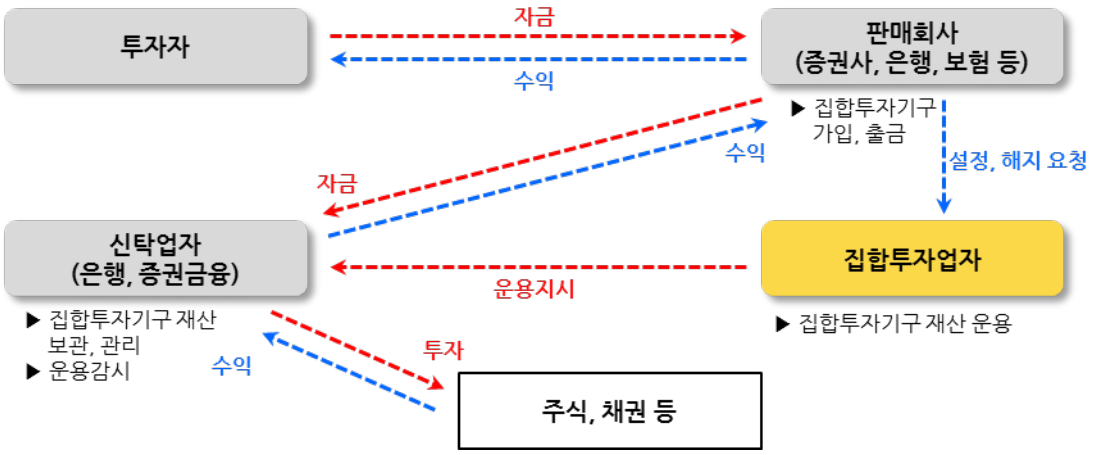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vam.koreainvestment.com)
회사연혁	2006. 02: 밸류운용㈜ 설립 2006. 04: 자산운용업 허가, 한국밸류자산운용㈜ 사명변경 2006. 12: 한국밸류 10 년투자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6 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상 수상 2006. 12: 이채원 전무, 금융감독원 선정 '올해의 업무유공자' 수상 2008. 0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9. 04: 국내 최초 고객초청 운용보고대회 개최 2009. 07: 투자일임업 실시 2010. 02: '생활속의 펀드이야기' 펀드 역사 전시회 개최 2010. 02: 투자자문업 실시 2012. 07: 최대주주 변경(한국투자운용지주→한국투자증권)
자본금	131.3 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증권(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2.12.31	2021.12.31	계정과목	'22.01.01 ~'22.12.31	'21.01.01 ~'21.12.31
현금및예치금	10,142	12,025	영업수익	17,496	20,86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2,113	1,937	영업비용	21,880	11,25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791	783	**영업이익**	**-4,384**	**9,614**
지분법투자자산	502,496	641,408	영업외수익	2,271,973	897
종속기업투자주식	8,387	3,155	영업외비용	2,538	1,110
대출채권및수취채권	208	15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65,051**	**9,401**
유형자산	423	833	법인세비용	606,833	2,640
무형자산	896	894	**당기순이익**	**1,658,218**	**6,760**
이연법인세자산	0	1,342			
기타자산	3,653	1,509			
자 산 총 계	**2,929,108**	**664,043**			
퇴직급여부채	115	0			
충당부채	114	112			
이연법인세부채	598,434	0			
기타부채	19,526	6,236			
부 채 총 계	**618,189**	**6,348**			
자본금	13,130	13,130			
자본잉여금	622,848	622,84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8	-534			
이익잉여금	1,675,469	22,251			
자 본 총 계	**2,310,919**	**657,69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929,108**	**664,043**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8.28.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수탁고	12,794	503	8,119	0	0	4,834	0	26,25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NH 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 (☎1544-0000)
홈페이지	http://www.nhqv.com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금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 및 책임

- 의무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제88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 1, 44 층 (☎ 02-769-78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orfp.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산정 및 통보

(3) 의무 및 책임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법령 ·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02-2251-1300)	www.koreaap.com
KIS 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NICE 피앤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의무 및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 190 조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 · 신탁계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계약서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 222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 서류"라 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역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행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기본원칙

- 당사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선정 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Trader, Manager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이 주식부문, 채권부문 모두 3 개월에 1 회 실시합니다.

(3) 평가 항목

- 매매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 정확성, 시장정보 제공 및 수준, 신용도, Back-office 의 서비스 수준, 수수료 수준 등 매매업무 기여도와 관련된 사항과 시장, 업종 또는 종목 분석자료의 효용성, 분석 Tool 의 제공, 시장정보의 제공 및 수준, 종목추천, 기업탐방 주선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펀드운용 및 기업분석 업무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주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집함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에 일시 납입
투자금액	2 억원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에 일시 회수

주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2) 의무투자기간(3 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존속기간이 3 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다만, 당초 존속기간이 3 년 미만이었으나, 집합투자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간을 3 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 년간 투자

②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투자 의무를 승계(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주 3) 의무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4)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5)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일 시점 내용이므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6)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 ·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